

제조업 파견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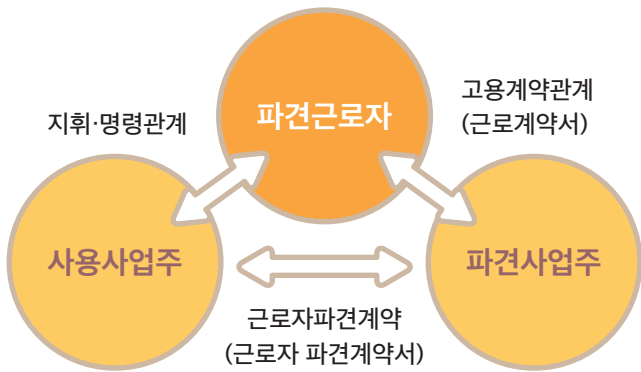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일정기간 파견 업무가 가능한 경우

-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 ▶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 ※ 파견기간은 3월 이내임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 기간 동안 연장 가능)

2 제조업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 도급작업
 - ▶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하는 작업
 - ▶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현장의 목소리



일감이 늘어 예전보다 일하는 사람은 많아 졌어요. 납품할 물건들을 둘 곳이 없다보니 통로까지 박스를 쌓아 두었어요. 쉬는 시간에 갈 데도 없어서 비좁은 통로에 박스 놓아 있는 데 다칠까봐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작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에서 나온 분들이 우리 작업장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다음날부터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요즘에는 야식을 주지 않는대요. 야간조는 1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니, 몸은 지치고 잘 시간도 부족해 식사도 대충할 수밖에 없어요. 속 쓰리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처럼 파견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잘 안보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유는 몰라요. 뉴스 볼 시간도 없고...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아 잘 몰라요

전송



파견근로자의 건강관리

파견사업주의 의무사항

- ▶ 제조업 파견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 ▶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파견근로자의 의무사항

-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따름
- ▶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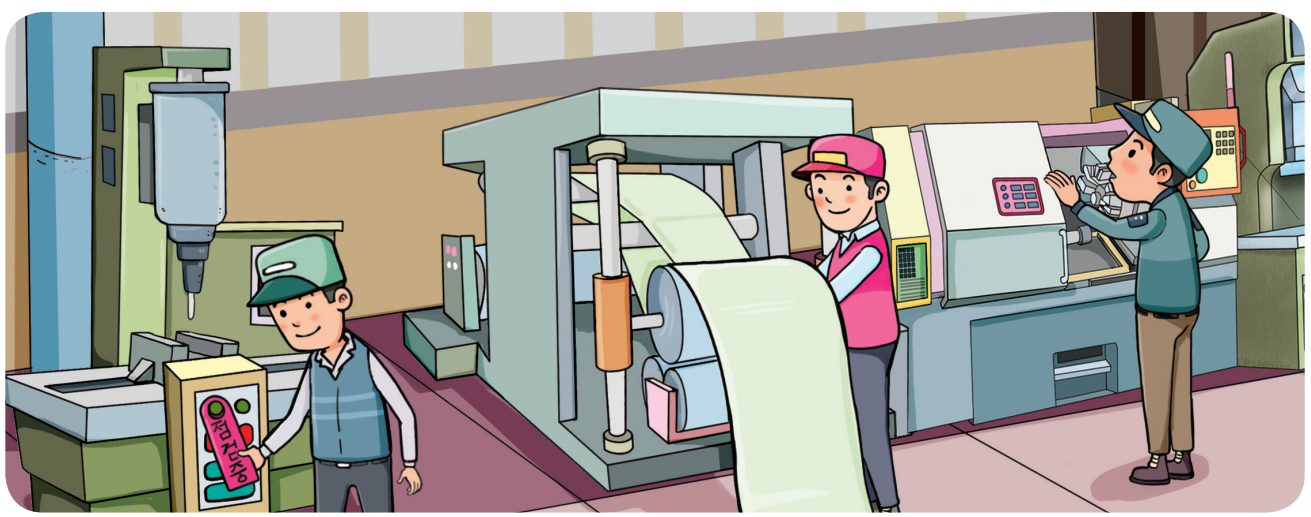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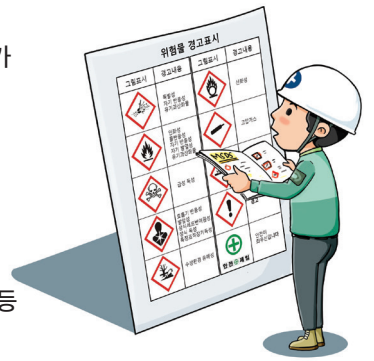
사용사업주의 의무사항

- ▶ 제조업 파견근로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
- ▶ **작업환경측정 실시**
- ▶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전체환기**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MSDS**를 게시, 비치 및 관리
- ▶ 화학물질 취급 파견근로자에게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 제공 및 MSDS 교육을 실시하고 5년간 **교육**에 관한 기록 보관
- ▶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를 파견근로자에게 제공
- ▶ 보호구 관리 및 착용상태 관리



파견근로자의 건강관리

방법	내용	관리방안
직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증기 분진 등 · 소음 및 진동, 온·습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증기·작업환경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 환기시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 화학물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 보호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분진 등 · 소음 및 진동, 온·습도 등
작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교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게 교대작업 일정 사전 공지 · 연속적 야간작업 최소화 ▶ 장시간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휴식시간 보장,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 확보
건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 수면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근골격계질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요인조사 실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 뇌심혈관질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위험도 평가를 통한 적절한 배치 및 사후관리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끼임, 미끄러짐, 걸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잠재요소 점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 대상 사고사례 전파,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사항 등 교육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하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전문가 현황: 직업환경전문, 임상심리사, 운동처방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물리치료사 등

Tel. 1577-6497, 1588-6497

